

부속서 III

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유보 및 비합치 조치 목록

일본

목록 가

주해

1. 목록 가는 제8.8조(비합치 조치 목록)제1항 및 제10.8조(유보 및 비합치 조치) 제1항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않는 기존의 조치에 대하여 일본이 유보한 항목을 규정한다.

가. 제8.4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3조(내국민 대우)

나. 제8.5조(시장접근)

다. 제8.6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4조(최혜국 대우)

라. 제8.11조(현지주재)

마. 제10.6조(이행요건 금지)또는

바. 제10.7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1,2}

2. 각 유보항목은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¹목록 가의 목적상, “의무유형”에 명시된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는 제 10.2 조(적용범위)제 3 항에 따라 부과되는,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관련된 의무를 포함한다.

²투명성 목적상, 목록 가의 유보항목은 제 10.15 조(안보 예외), 제 17.12 조(일반적 예외) 또는 제 17.13 조(안보 예외)에 따라 일본이 한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다. **산업분류**는 적용 가능한 경우, 그리고 투명성 목적으로만, 국내 또는 국제 산업분류코드에 따라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활동을 지칭한다.

라. **정부수준**은 유보된 조치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적시한다.

마. **의무유형**은 제1항에 언급된 유보된 의무를 명시한다.

바. **유보내용**은 제1항에 언급된 의무와 관련하여 유보된 기존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을 규정한다. 그리고

사. **조치**는 유보된 기존의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 인용된 조치는,

-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 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모든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3. 유보항목을 해석할 때, 그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유보항목은 유보된장들의 관련 조항에 비추어 해석된다. **조치** 요소는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4. 금융 서비스에 대하여,

가. 부속서 8-가(금융 서비스) 제4조(건전성 조치)의 맥락에서 건전성을 이유로, 일본은 상업적 주재의 법적 형태에 대한 비차별적 제한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일본은 신규 금융 서비스 시장으로의 진입에 대하여 그러한 건전성 목표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들에 합치되는 비차별적 제한을 적용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증권회사는 일본의 관련 법과 규정에 정의된 증권의 거래가 허용되

며, 은행은 그러한 법과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증권
의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 서비스 공급자의 어떠한 적극적 마케팅 없이 다른 당사자의 영역에서 일본
의 서비스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서비스는 제8.1조(정의)러호2목에 따라 공
급되는 서비스로 간주된다.

5. 항공운송 서비스에 대하여, 운항권 또는 운항권의 행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제8.2조(적용범위)에 따라 제8장(서비스 무역)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므로 목록 가에 열거되지 않는다.

6. 구체적 약속 양허표 기재지침(2001년 3월 28일자 WTO 문서 S/L/92) 첨부
6을 고려하여, 제8.5조(시장접근)에 따른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전파의 이용가능성에
관한 일본의 법과 규정은 목록 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7. 제8장(서비스 무역)의 목적상, 일본은 GATS 제28조카호2목2에 따라 통보를
제출한 당사자의 영주권자를 제외하고 다른 당사자의 영주권자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8. 목록 가의 목적상, “JSIC”란 일본 총무성이 규정하고 2013년 10월 30일에
개정된 일본표준산업분류를 말한다.

1	분야	:	농업, 임업 및 수산업, 그리고 관련 서비스(이 유보목록의 목록 나의 유보항목 12 번 및 18 번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JSIC 01 농업 JSIC 02 임업 JSIC 03 양식업을 제외한 수산업 JSIC 04 양식업 JSIC 6324 농업협동조합 JSIC 6325 수산업 및 수산업가공협동조합 JSIC 871 달리 분류되지 않은 농림수산업협동조합 협회
	정부수준	:	중앙정부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1. 일본에서 농업, 임업 및 수산업, 그리고 관련 서비스(이 유보목록의 목록 나의 유보항목 12 번 및 18 번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따른 사전 통보 요건 및 심사 절차가 적용된다.

		<p>2. 심사는 그 투자가 일본 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실시된다.³</p> <p>3. 심사 결과에 따라 그 투자자는 투자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또는 투자 절차를 중지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p>
조치	:	<p>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제 27 조(1949년 법률 제 228 호)</p> <p>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정령 제 3 조(1980년 정령 제 261 호)</p>

³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목록 가의 유보항목 10, 12, 13, 15, 37, 46, 47, 55 및 57 번에 언급된 “국가 안보”에 대한 언급이 이 유보내용에서 누락되었다고 하여, 제 10.15 조(안보 예외) 및 17.13 조(안보 예외)가 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그 심사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일본이 제 10.15 조(안보 예외) 및 17.13 조(안보 예외)를 원용할 자신의 권리를 일본이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	분야	:	자동차정비업
	하위분야	:	명시된 자동차 정비 및 수리업
	산업분류	:	JSIC 89 자동차정비 서비스
	정부수준	:	중앙정부
	의무유형	: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명시된 자동차 정비 및 수리업을 수행하려는 인은 일본에 사업장을 설립하고 사업장이 소재한 구역을 관할하는 운수국 국장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된다.
	조치	:	도로차량법제 6 장(1951 년 법률 제 185 호)

3	분야	:	사업 서비스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JSIC 9111 고용서비스 JSIC 9121 근로자파견서비스
	정부수준	:	중앙정부
	의무유형	: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u></p> <p>1. 일본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의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인은 일본에 설립체를 보유하고 적용 가능한 경우,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그에 통보를 제출하도록 요구된다.</p> <p>가. 수수료를 청구하는 건설근로자 직업소개 서비스 및 선원 직업소개 서비스를 포함하는 민간직업소개 서비스, 또는</p> <p>나. 항만근로자 파견서비스, 선원 파견서비스 및 건설근로자 근로 기회 보장 서비스를 포함하는 근로자 파견서비스</p> <p>2. 노동 공급서비스는 고용안정법 또는 선원고용안정법에 따라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에 의해서만 공급될 수 있다.</p>
	조치	:	고용안정법제 3 장 및 제 3-3 장(1947 년 법률

	<p>제 141 호)</p> <p>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절한 운영확보 및 파견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 제 2 장(1985 년 법률 제 88 호)</p> <p>항만노동법제 4 장(1988 년 법률 제 40 호)</p> <p>선원고용안정법제 3 장(1948 년 법률 제 130 호)</p> <p>건설 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 제 5 장 및 제 6 장(1976 년 법률 제 33 호)</p>
--	---

4	분야	:	수금 대리 서비스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JSIC 6619 각종 금융 부수업 JSIC 72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직 서비스
	정부수준	:	중앙정부
	의무유형	: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1.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구성하는 수금 대리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인은 일본의 법과 규정에 따른 변호사(“벤고시”), 일본의 법과 규정에 따른 변호사법인(“벤고시 호진”)이나 신용관리 및 수금 사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는 자격을 취득하고, 일본에 사무소를 설립하도록 요구된다. 2. 신용관리 및 수금 사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에 따라 채권을 취급하는 그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제외하고 어떠한 인도 사업으로서 타인의 채권을 인수 및 회수할 수 없다.
	조치	:	신용관리 및 수금 사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3 조 및 제 4 조(1998 년 법률 제 126 호) 변호사법 제 72 조 및 제 73 조(1949 년 법률 제 205 호)

5	분야	:	건설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p>JSIC 06 공공 및 민간 건설업을 포함하는 일반 건설업</p> <p>JSIC 07 장비설치업을 제외한 전문 계약업자에 의한 건설업</p> <p>JSIC 08 장비설치업</p>
	정부수준	:	중앙정부
	의무유형	:	<p>시장접근(제 8.5 조)</p> <p>현지주재(제 8.11 조)</p>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u></p> <p>1. 건설업을 수행하려는 인은 일본에 사업장을 설립하고 국토교통성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구역을 관할하는 현의 지사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요구된다.</p> <p>2. 철거 사업을 수행하려는 인은 일본에 사업장을 설립하고 사업장이 소재한 구역을 관할하는 현의 지사에게 등록되도록 요구된다.</p>
	조치	:	<p>건설업법 제 2 장(1949 년 법률 제 100 호)</p> <p>건설자재 재활용에 관한 법 제 5 장(2000 년 법률 제 104 호)</p>

6	분야	:	유통 서비스
	하위분야	:	주류 관련 도매 서비스, 소매 서비스, 위탁중개인 서비스
	산업분류	:	JSIC 5222 주류 JSIC 5851 주류점
	정부수준	:	중앙정부
	의무유형	: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주세 세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주류의 수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하위분야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되는 면허의 수가 제한될 수 있다(주세법 제 10 조제 11 항).
	조치	:	주세법 제 9 조부터 제 11 조까지(1953 년 법률 제 6 호)

7	분야	:	교육 및 학습지원
	하위분야	:	고등교육 서비스
	산업분류	:	JSIC 816 고등교육기관
	정부수준	:	중앙정부
	의무유형	: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본에서 정규교육으로 공급되는 고등교육 서비스는 정규교육기관에 의하여 공급되도록 요구된다. 정규교육기관은 학교법인에 의하여 설립되도록 요구된다. 2. “정규교육기관”이란 초등학교, 중학교, 중등교육학교, 의무교육학교,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고등전문학교, 특별지원학교, 유치원 및 유아교육보육연계형인정어린이집을 말한다. 3. “학교법인”이란 일본의 법과 규정에 따라 교육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조치	:	<p>교육기본법 제 6 조(2006 년 법률 제 120 호)</p> <p>학교교육법 제 2 조(1947 년 법률 제 26 호)</p> <p>사립학교법 제 3 조(1949 년 법률 제 270 호)</p>

8	분야	:	금융 서비스
	하위분야	:	은행 및 그 밖의 금융 서비스(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는 제외한다)
	산업분류	:	JSIC 622 중앙은행을 제외한 은행 JSIC 631 소기업 대상 금융기관
	정부수준	:	중앙정부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예금보험제도는 일본의 관할권 내에 본점이 있는 금융기관만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예금보험제도는 외국 은행 지점이 수취한 예금은 적용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조치	:	예금보험법 제 2 조(1971 년 법률 제 34 호)

9	분야	:	금융 서비스
	하위분야	: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산업분류	:	JSIC 672 손해보험기관 JSIC 6742 손해보험대리인 및 중개인
	정부수준	:	중앙정부
	의무유형	: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다음 항목에 관한 보험계약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상업적 주체가 요구된다. 가. 일본 내에서 운송되는 상품, 그리고 나. 국제 해상운송에 사용되지 않는 일본 등록 선박
	조치	:	보험업법제 185 조, 제 186 조, 제 275 조부터 제 277 조까지, 제 286 조 및 제 287 조(1995 년 법률 제 105 호) 보험업법 시행에 관한 정령 제 19 조 및 제 39-2 조(1995 년 정령 제 425 호) 보험업법 시행에 관한 성령 제 116 조 및 제 212-6 조(1996 년 재무성령 제 5 호)

10 분야	:	열공급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JSIC 3511 열공급
정부수준	:	중앙정부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본에서 열 공급 산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따른 사전 통보 요건 및 심사 절차가 적용된다. 2. 심사는 그 투자가, 국가 안보가 침해되거나 공공 질서의 유지가 저해되거나 공공 안전의 보호가 방해되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실시된다. 3. 심사 결과에 따라 그 투자자는 투자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또는 투자 절차를 중지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조치	:	<p>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제 27 조(1949년 법률 제 228 호)</p> <p>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정령 제 3 조(1980년 정령 제 261 호)</p>

11	분야	:	정보통신
	하위분야	:	통신
	산업분류	:	JSIC 3700 관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본점 JSIC 3711 유선방송전화를 제외한 지역통신 JSIC 3731 통신 부수 서비스
	정부수준	:	중앙정부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1. 가호부터 다호까지에 규정된 인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한 의결권 비율의 총계가 3분의 1 이상인 경우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는 그 주주명부에 그 이름과 주소를 기재할 수 없다.</p> <p>가.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연인</p> <p>나. 외국 정부 또는 그 대표, 그리고</p> <p>다. 외국 법인 또는 외국 실체</p> <p>2.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연인은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동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및 서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또는</p>

		감사 직책을 맡을 수 없다.
조치	: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등에 관한 법 제 6 조 및 제 10 조(1984년 법률 제 85 호)

12	분야	:	정보통신
	하위분야	:	통신 및 인터넷 기반 서비스
	산업분류 ⁴	:	JSIC 3711 유선방송전화를 제외한 지역통신 JSIC 3712 장거리통신 JSIC 3713 유선방송전화 JSIC 3719 그 밖의 고정통신 JSIC 3721 이동통신 JSIC 4011* 포털 사이트 제공자 JSIC 4012*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 JSIC 4013 인터넷 지원 서비스
	정부수준	:	중앙정부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1. 일본에서 통신사업 및 인터넷 기반 서비스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따른 사전 통보 요건 및 심사 절차가 적용된다. 2. 심사는 그 투자가, 국가 안보가 침해되거나 공공 질서의 유지가 저해되거나 공공 안전의 보호가 방해되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의

⁴ JSIC 번호 위의 별표(*)는 그러한 번호에 따라 이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활동이 통신사업법(1984년 법률 제 86호) 제 9조에 따른 등록 의무의 대상이 되는 활동으로 제한된다는 것을 표시한다.

		<p>관점에서 실시된다.</p> <p>3. 심사 결과에 따라 그 투자자는 투자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또는 투자 절차를 중지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p>
조치	:	<p>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제27조 및 제28조(1949년 법률 제228호)</p> <p>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정령 제3조 및 제4조(1980년 정령 제261호)</p>

13	분야	:	제조업, 정보통신
	하위분야	:	전자부품, 장치 및 전자회로의 제조, 그리고 정보 서비스
	산업분류	:	JSIC 2814 집적회로 JSIC 2831 반도체 메모리 미디어 JSIC 2832 광학디스크, 자기테이프 및 디스크 JSIC 2842 전자회로구현보드 JSIC 3011 유선통신장비 JSIC 3012 이동전화 및 간이형휴대전화시스템(PHS) JSIC 3013 라디오통신장비 JSIC 3031 개인용 컴퓨터를 제외한 컴퓨터 JSIC 3032 개인용 컴퓨터 JSIC 3033 외부기억장치 JSIC 3911 맞춤형 소프트웨어 서비스 JSIC 3912 내장형 소프트웨어 서비스 JSIC 3913 패키지 소프트웨어 서비스 JSIC 3921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정부수준	:	중앙정부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1. 일본에서 전자부품, 장치 및 전자회로의 제조업, 그리고 정보 서비스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따른 사전

		<p>통보 요건 및 심사 절차가 적용된다.</p> <p>2. 심사는 그 투자가, 국가 안보가 침해되거나 공공 질서의 유지가 저해되거나 공공 안전의 보호가 방해되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실시된다.</p> <p>3. 심사 결과에 따라 그 투자자는 투자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또는 투자 절차를 중지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p>
조치	:	<p>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제27조 및 제28조(1949년 법률 제228호)</p> <p>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정령 제3조 및 제4조(1980년 정령 제261호)</p>

14	분야	:	제조업
	하위분야	:	선박건조 및 수리, 그리고 선박 엔진
	산업분류	:	JSIC 3131 선박건조 및 수리
	정부수준	:	중앙정부
	의무유형	: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u></p> <p>총톤수가 500 이상 또는 길이가 50 미터 이상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에 사용될 수 있는 부두를 설립하거나 확장하려는 인은 국토교통성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요구된다. 면허 발급은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을 조건으로 한다.</p>
	조치	:	조선법 제 2 조부터 제 3-2 조까지(1950 년 법률 제 129 호)

15	분야	:	제조업
	하위분야	:	약품 및 의약품, 그리고 의료기기 제조
	산업분류 ⁵	:	JSIC 165* 의약품 JSIC 1653 생물학적제제 JSIC 165 및 1653에 관련된 JSIC 대분류E(제조업)의 의약품 중간체 JSIC 274* 의료기기 및 기구, 그리고 의료물품 JSIC 296* 전자장비 JSIC 2973* 의료측정기기
	정부수준	:	중앙정부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유보내용 ⁶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1. 일본에서 생물학적제제제조업, 항병원체제와 항기생충제 및 그 의약품 중간체의 제조업, 그리고 특별관리 의료기기와 그 부속품 및 특별관리 의료기구나 그 부속품의 구성품의 제조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따른 사전 통보 요건 및 심사 절차가

⁵ JSIC 번호 위의 별표(*)는 그러한 번호에 따라 이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활동이 항병원체제와 항기생충제, 그 의약품 중간체 및 특별관리 의료기기 제조업에 관련된 활동으로 제한된다는 것을 표시한다.

⁶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 가. “생물학적제제 제조업”은 백신, 혈청, 변성 독소, 항독소 및 위의 제제나 혈액제제와 유사한 제제를 생산하는 설립체에서의 경제 활동을 다룬다.
- 나. “항병원체제와 항기생충제”란 항병원체제와 항기생충제로 분류되고, 일본의 법과 규정에 따라 마케팅 승인을 받은 의약품을 말한다. 그리고
- 다. “특별관리 의료기기”란 일본의 법과 규정에 따라 특별관리 의료기기로 마케팅 승인이나 증명을 받은 의료기기를 말한다.

		<p>적용된다.</p> <p>2. 심사는 그 투자가, 국가 안보가 침해되거나 공공 질서의 유지가 저해되거나 공공 안전의 보호가 방해되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실시된다.</p> <p>3. 심사 결과에 따라 그 투자자는 투자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또는 투자 절차를 중지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p>
조치	:	<p>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제 27 조(1949년 법률 제 228 호)</p> <p>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정령 제 3 조(1980년 정령 제 261 호)</p>

16 분야	:	제조업
하위분야	:	가죽 및 가죽제품 제조
산업분류 ⁷	:	JSIC 1189*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섬유 의류 및 부속품 JSIC 1694*2 젤라틴 및 접착제 JSIC 192 고무 및 플라스틱 신발과 그 부자재 JSIC 2011 유연처리 및 마무리 공정 JSIC 2021 장갑 및 병어리장갑을 제외한 기계 및 산업용 가죽제품 JSIC 2031 가죽신발용 재료 및 부자재 JSIC 2041 가죽신발 JSIC 2051 가죽장갑 및 병어리장갑 JSIC 2061 가방 JSIC 207 핸드백 및 소형케이스 JSIC 2081 모피 JSIC 2099 그 밖의 유연처리 가죽제품 JSIC 3253*1 스포츠 및 운동 용품
정부수준	:	중앙정부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1. 일본에서 가죽 및 가죽제품 제조업에 투자하려는

⁷JSIC 번호 위의 별표(*1)는 그러한 번호에 따라 이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활동이 가죽 및 가죽제품 제조에 관련된 활동으로 제한된다는 것을 표시한다. JSIC 번호 위의 별표(*2)는 그러한 번호에 따라 이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활동이 아교(니카와) 및 젤라틴 제조에 관련된 활동으로 제한된다는 것을 표시한다.

		<p>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따른 사전 통보 요건 및 심사 절차가 적용된다.</p> <p>2. 심사는 그 투자가 일본 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실시된다.⁸</p> <p>3. 심사 결과에 따라 그 투자자는 투자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또는 투자 절차를 중지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p>
조치	:	<p>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제27조(1949년 법률 제228호)</p> <p>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정령 제3조(1980년 정령 제 261호)</p>

⁸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목록 가의 유보항목 10, 12, 13, 15, 37, 46, 47, 55 및 57 번에 언급된 “국가 안보” 에 대한 언급이 이 유보내용에서 누락되었다고 하여, 제 10.15 조(안보 예외) 및 제 17.13 조(안보 예외)가 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그 심사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일본이 제 10.15 조(안보 예외) 및 제 17.13 조(안보 예외)를 원용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7	분야	:	선박의 국적에 관련된 사안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
	정부수준	:	중앙정부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1. 일본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운영하는 등록 회사의 설립을 통한 국제 해상운송서비스(여객운송 및 화물운송 서비스를 포함한다)의 공급에는 국적 요건이 적용된다. 2. “국적 요건”이란 일본 국민 또는 일본의 법과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사에 의하여 그 선박이 소유되도록 요구되는 것을 말하며, 그러한 회사의 모든 대표와 사안을 관장하는 임원의 3분의 2 이상은 일본 국민이다.
	조치	:	선박법 제 1 조(1899 년 법률 제 46 호)

18	분야	:	검량 서비스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JSIC 7441 상품검사서비스 JSIC 745 감정인 증명
	정부수준	:	중앙정부
	의무유형	: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⁹	:	<u>서비스 무역</u>

⁹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가. “검량기기”란 검량에 사용되는 기구, 기계 또는 장비를 말한다.

나. “지정 검량기기”란 거래나 증명에 사용되는 검량기기 또는 일반 소비자의 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검량기기로서, 적절한 검량 실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조 및 기기 오류에 관련된 기준을 수립할 필요성에 따라 정령에 의하여 지정된 검량기기를 말한다.

다. 제 3 항에 기술된 요건에 따른 “검량 증명 사업”은 다음에 열거되어 있으며 등록은 경제산업성령에서 지정된 사업 분류에 따른다.

- 1) 운송, 위탁 또는 판매나 구매를 위하여 선적이나 하역 또는 입고나 출고 예정인 상품의 길이, 무게, 면적, 부피 또는 온도에 대한 검량 증명 사업(선박 선적 또는 하역 예정인 상품의 중량이나 부피에 대한 검량 증명은 제외한다), 그리고
- 2) 정령에 의하여 지정된 농도, 음압 수준, 또는 그 밖의 물리적 현상의 수량에 대한 검량 증명 사업(다호 1 목에 열거된 사항은 제외한다)

다만, 이 요건은 검량 증명 사업에 종사하는 인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 정령에 의하여 검량 증명 사업을 적절히 수행할 능력을 갖춘 인으로 지정되고 독립행정법인의 일반규칙에 관한 법(1999 년 법률 제 103 호) 제 2 조제 1 항에 규정된 독립행정법인인 경우, 또는 검량 증명 사업이 그 정령에 의하여 지정된 법 조항에 따라 그 사업을 수행하도록 등록 또는 지정되거나 그 밖의 모든 처분을 받은 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라. “지정 검량 증명 사업”이란 다호 2 목에 규정된 상당히 미미한 수량의 물리적 현상에 대한 검량을 증명할 목적으로 정령에 의하여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으로 정령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지정 검량기기의 정기 검사를 실시하는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인은 일본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그 인이 그러한 검사를 실시하려는 구역을 관할하는 현의 지사, 또는 그 인이 그러한 검사를 실시하려는 장소가 지정된 시, 구 또는 촌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시의 시장 또는 지정된 구나 촌의 장으로부터 지정되도록 요구된다. 2. 지정 검량기기의 검증을 실시하는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인은 일본에 법인을 설립하고 경제산업성장관으로부터 지정되도록 요구된다. 3. 지정 검량 증명 사업을 포함하여 검량 증명 사업을 수행하려는 인은 일본에 설립체를 보유하고 그 설립체가 소재하는 구역을 관할하는 현의 지사에게 등록되도록 요구된다. 4. 검량 증명에 사용되는 지정 검량기기의 검사를 실시하는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인은 일본에 법인을 설립하고 그러한 검사를 실시하려는 구역을 관할하는 현의 지사로부터 지정되도록 요구된다. 5. 지정 검량 증명 사업에 종사하는 인을 대상으로 인정을 실시하는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인은 일본에 법인을 설립하고 경제산업성장관으로부터 지정되도록 요구된다. 6. 검량기기의 교정을 실시하는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	--	--

		<p>인은 일본에 법인을 설립하고 경제산업성장관으로부터 지정되도록 요구된다.</p>
조치	:	<p>검량법 제 3 장, 제 5 장, 제 6 장 및 제 8 장(1992 년 법률 제 51 호)</p> <p>검량법에 관한 규정(1993 년 경제산업성령 제 69 호)</p> <p>지정검사기관, 지정검증기관, 지정검량증명검사기관, 지정검량증명인정기관에 관한 성령(1993 년 경제산업성령 제 72 호)</p>

19	분야	:	의료, 보건 및 복지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JSIC 8599 그 밖의 사회보험, 사회복지 및 요양서비스
	정부수준	:	중앙정부
	의무유형	: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일본의 법과 규정에 따라 후생노동성장관에 의하여 승인된 사업주 협회 또는 그러한 협회의 연합만이 사업주가 위임한 노동보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일본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그러한 노동보험 사업을 수행하려는 협회는 일본에 사무소를 설립하고 후생노동성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된다.
	조치	:	노동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 제 4 장(1969 년 법률 제 84 호) 노동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에 대한 시행규정(1972 년 노동성령 제 8 호)

20	분야	:	광업 및 광업 부수 서비스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JSIC 05 광업 및 암석과 왕자갈 채석업
	정부수준	:	중앙정부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일본 국민 또는 일본 법인만이 광업권 또는 광업리스권을 보유할 수 있다. ¹⁰
	조치	:	광업법제 2 장 및 제 3 장(1950 년 법률 제 289 호)

¹⁰광업법 제 2 장과 제 3 장에 따라, 광업권 또는 광업리스권이 요구되는 서비스는 일본 국민 또는 일본의 법과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의하여 공급되도록 요구된다.

21	분야	:	석유 산업
	하위분야	:	-
	산업분류 ¹¹	:	JSIC 053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 JSIC 1711 석유정제 JSIC 1721 윤활유 및 그리스(석유정제소에서 생산된 경우는 제외한다) JSIC 1741*1 포장재료 JSIC 1799*1 그 밖의 석유 및 석탄제품 JSIC 4711*1 냉장 창고업을 제외한 일반 창고업 JSIC 4721*1 냉장 창고업 JSIC 5331 석유 JSIC 6051 주유소 JSIC 6052*1 주유소를 제외한 연료점 JSIC 9299*2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사업 서비스
	정부수준	:	중앙정부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1. 일본에서 석유 산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따른 사전 통보 요건 및 심사 절차가 적용된다.

¹¹ JSIC 번호 위의 별표(*1)는 그러한 번호에 따라 이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활동이 석유 산업에 관련된 활동으로 제한된다는 것을 표시한다. JSIC 번호 위의 별표(*2)는 그러한 번호에 따라 이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활동이 액화석유가스 산업에 관련된 활동으로 제한된다는 것을 표시한다.

	<p>2. 심사는 그 투자가 일본 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실시된다.¹²</p> <p>3. 심사 결과에 따라 그 투자자는 투자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또는 투자 절차를 중지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p> <p>4. 에틸렌, 에틸렌 글라이콜 및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모든 유기화학물은 석유 산업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의 제조에 대한 투자에는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따른 사전 통보 요건 및 심사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p>
조치	<p>: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제 27 조(1949년 법률 제 228 호)</p> <p>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정령 제 3 조(1980년 정령 제 261 호)</p>

¹²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목록 가의 유보항목 10, 12, 13, 15, 37, 46, 47, 55 및 57 번에 언급된 “국가 안보”에 대한 언급이 이 유보내용에서 누락되었다고 하여, 제 10.15 조(안보 예외) 및 제 17.13 조(안보 예외)가 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그 심사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일본이 제 10.15 조(안보 예외) 및 제 17.13 조(안보 예외)를 원용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2	분야	:	전문직 서비스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JSIC 7211 변호사 사무소
	정부수준	:	중앙정부
	의무유형	: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u></p> <p>1. 법률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자연인은 일본의 법과 규정에 따라 변호사(“벤고시”) 자격을 갖추고 그 자연인이 소속된 그 지역 변호사협회의 구역에 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p> <p>2. 법률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기업은 일본의 법과 규정에 따라 변호사법인(“벤고시 호진”)을 설립해야 한다.</p>
	조치	:	변호사법 제 3 장부터 제 5 장까지 및 제 9 장 (1949 년 법률 제 205 호)

23	분야	:	전문직 서비스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JSIC 7211 변호사 사무소
	정부수준	:	중앙정부
	의무유형	: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법에 관한 법률 자문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자연인은 일본의 법과 규정에 따라 외국법사무변호사(“가이코쿠호 지무 벤고시”) 자격을 갖추고 그 자연인이 소속된 그 지역 변호사협회의 구역에 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 2. 일본의법과 규정에 따른 가이코쿠호 지무 벤고시는 매년 180 일 이상을 일본에 체류해야 한다. 3. 외국법에 관한 법률 자문서비스를 공급하려는 기업은 일본의 법과 규정에 따라 외국법사무변호사법인(“가이코쿠호 지무 벤고시 호진”)을 설립해야 한다.
	조치	: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 서비스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 제 2 장, 제 4 장 및 제 5 장 (1986 년 법률 제 66 호)

24	분야	:	전문직 서비스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JSIC 7212 변리사 사무소
	정부수준	:	중앙정부
	의무유형	: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1. 변리사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자연인은 일본의 법과 규정에 따라 변리사(“벤리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변리사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기업은 일본의 법과 규정에 따라 특허업무법인(“토쿄 교무 호진”)을 설립해야 한다.
	조치	:	변리사법 제 3 장, 제 6 장 및 제 8 장 (2000 년 법률 제 49 호)

25	분야	:	전문직 서비스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JSIC 7221 공증인 및 법무사 사무소
	정부수준	:	중앙정부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1. 오직 일본 국민만 일본에서 공증인으로 지명될 수 있다. 2. 공증인은 법무성장관이 지정한 장소에 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
	조치	:	공증인법 제 2 장 및 제 3 장 (1908 년 법률 제 53 호)

26	분야	:	전문직 서비스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JSIC 7221 공증인 및 법무사 사무소
	정부수준	:	중앙정부
	의무유형	: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1. 법무사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자연인은 일본의 법과 규정에 따라 사법서사(“시호 쇼시”) 자격을 갖추고 그 자연인이 소속된 법무사협회의 구역에 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 2. 법무사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기업은 일본의 법과 규정에 따라 사법서사법인(“시호 쇼시 호진”)을 설립해야 한다.
	조치	:	사법서사법 제3장부터 제5장까지, 제7장 및 제10장 (1950년 법률 제197호)

27	분야	:	전문직 서비스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JSIC 7241 공인회계사 사무소
	정부수준	:	중앙정부
	의무유형	: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1. 공인회계사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자연인은 일본의 법과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코닌카이케이시”) 자격을 갖춰야 한다. 2. 공인회계사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기업은 일본의 법과 규정에 따라 감사법인(“칸사 호진”)을 설립해야 한다.
	조치	:	공인회계사법 제 3 장, 제 5-2 장 및 제 7 장 (1948 년 법률 제 103 호)

28	분야	:	전문직 서비스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JSIC 7242 공인세무사 사무소
	정부수준	:	중앙정부
	의무유형	: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1. 공인세무사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자연인은 일본의 법과 규정에 따라 세리사(“제이리시”) 자격을 갖추고 그 자연인이 소속된 세무사회의 구역에 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 2. 공인세무사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기업은 일본의 법과 규정에 따라 세리사법인(“제이리시 호진”)을 설립해야 한다.
	조치	:	세리사법 제3장, 제4장 및 제5-2장부터 제7장까지 (1951년 법률 제237호) 세리사법에 대한 시행규정(1951년 재무성령 제55호)

29	분야	:	전문직 서비스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JSIC 7231 행정사 사무소 JSIC 7294 부동산감정사 JSIC 72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직 서비스 JSIC 7421 건축설계서비스
	정부수준	:	중앙정부
	의무유형	: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일본의 법과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건축가나 건축 엔지니어(“켄치쿠시”), 또는 그러한 건축가나 건축 엔지니어를 고용하여 타인의 의뢰에 따라 보수를 받고 설계업무, 건설공사 감리, 건설공사 계약에 관련된 행정업무, 건물 건설공사 감독, 건축물 측량 및 평가, 건설 관련 일본의 법과 규정에 따른 절차상의 대표를 수행하려는 인은 일본에 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
	조치	:	건축사 및 건축 엔지니어에 관한 법 제 1 장, 제 2 장 및 제 6 장 (1950 년 법률 제 202 호)

30	분야	:	전문직 서비스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JSIC 7251공인사회보험노무사 사무소
	정부수준	:	중앙정부
	의무유형	: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1. 사회보험노무사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자연인은 일본의 법과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노무사(“샤카이 호켄 로무시”) 자격을 갖추고 일본에서 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 2. 사회보험노무사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기업은 일본의 법과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노무사법인(“샤카이 호켄 로무시 호진”)을 설립해야 한다.
	조치	:	사회보험노무사법 제 2-2 장 및 제 4-2 장부터 제 5 장까지(1968 년 법률 제 89 호)

31	분야	:	전문직 서비스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JSIC 7231 행정사 사무소
	정부수준	:	중앙정부
	의무유형	: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서비스 무역 1. 행정사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자연인은 일본의 법과 규정에 따라 행정서사(“교세이 쇼시”) 자격을 갖추고 그 자연인이 소속된 행정사협회의구역에 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 2. 행정사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기업은 일본의 법과 규정에 따라 행정서사법인(“교세이 쇼시 호진”)을 설립해야 한다.
	조치	:	행정서사법 제 3 장부터 제 5 장까지 및 제 8 장 (1951 년 법률 제 4 호)

32	분야	:	전문직 서비스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JSIC 72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직 서비스
	정부수준	:	중앙정부
	의무유형	: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u></p> <p>해사대리인 서비스는 일본의 법과 규정에 따라 해사대리인(“카이지다이리시”) 자격을 갖춘 자연인에 의하여 공급되어야 한다.</p>
	조치	:	해사대리인법 제 17 조 (1951 년 법률 제 32 호)

33	분야	:	전문직 서비스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JSIC 7222 토지가옥조사사 사무소
	정부수준	:	중앙정부
	의무유형	: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1. 토지가옥조사사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자연인은 일본의 법과 규정에 따라 토지가옥조사사(“토치 카오쿠 조사사”) 자격을 갖추고 그 자연인이 소속된 토지가옥조사사협회의 구역에 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 2. 토지가옥조사사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기업은 일본의 법과 규정에 따라 토지가옥조사사법인(“토치 카오쿠 조사사 호진”)을 설립해야 한다.
	조치	:	토지가옥조사사법 제 3 장부터 제 5 장까지, 제 7 장 및 제 10 장 (1950 년 법률 제 228 호)

34	분야	:	부동산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JSIC 6811 건물 및 주택 판매대리인 JSIC 6812 토지 구획업자 및 개발업자 JSIC 6821 부동산 대리인 및 중개인 JSIC 6941 부동산 관리인
	정부수준	:	중앙정부
	의무유형	: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1. 택지 및 건물 거래업을 수행하려는 인은 일본에 사무소를 설립해야 하고 국토교통성장관 또는 사무소가 소재하는 구역을 관할하는 현의 지사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2. 부동산특정공동사업을 수행하려는 인은 일본에 사무소를 설립해야 하고 권한 있는 장관 또는 사무소가 소재하는 구역을 관할하는 현의 지사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거나 권한 있는 장관에게 통보를 제출해야 한다. 3. 콘도미니엄 관리업을 수행하려는 인은 일본에 사무소를 설립해야 하고 국토교통성에서 관리하는 목록에 등록되어야 한다.

조치	: 택지건물거래업법 제2장 (1952년 법률 제176호) 부동산특정공동사업법 제2장 및 제5장부터 제7장까지 (1994년 법률 제77호) 콘도미니엄 관리 개선에 관한 법 제3장 (2000년 법률 제149호)
----	---

35	분야	:	부동산 감정평가 서비스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JSIC 7294 공인부동산감정사
	정부수준	:	중앙정부
	의무유형	: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부동산 감정평가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인은 일본에 사무소를 설립해야 하고 국토교통성 또는 사무소가 소재하는 구역을 관할하는 현에서 관리하는 목록에 등록되어야 한다.
	조치	: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법 제 3 장 (1963 년 법률 제 152 호)

36	분야	:	선원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JSIC 031 해양수산업 JSIC 451 외항운송 JSIC 452 연안운송
	정부수준	:	중앙정부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관련 고시에 언급된 선원을 제외하고, 일본 기업이 고용한 외국 국민은 일본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서 근무할 수 없다.
	조치	:	선원법 제 4 장(1947 년 법률 제 100 호) 운수성 해양기술안전국 선원과 국장 고시 1990 년 제 115 호 운수성 해양기술안전국 선원과 국장 고시 1990 년 제 327 호 국토교통성 해양국장 고시 2004 년 제 153 호

37	분야	:	경비서비스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JSIC 923 수위 서비스
	정부수준	:	중앙정부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본에서 경비 서비스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따른 사전 통보 요건 및 심사 절차가 적용된다. 2. 심사는 그 투자가 국가 안보가 침해되거나 공공 질서의 유지가 저해되거나 공공 안전의 보호가 방해되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실시된다. 3. 심사 결과에 따라, 그 투자자는 투자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또는 투자 절차를 중지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조치	:	<p>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제27조(1949년 법률 제228호)</p> <p>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정령 제3조(1980년 정령 제 261호)</p>

38	분야	:	산업안전보건 관련 서비스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JSIC 72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직 서비스 JSIC 7441 상품검사 서비스 JSIC 7452 환경조사인증 서비스 JSIC 8222 직업훈련센터
	정부수준	:	중앙정부
	의무유형	: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작업 기계에 대한 검사 또는 검증 서비스, 기술훈련과정,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그 밖의 관련 서비스 또는 작업환경측정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인은 일본에 거주하거나 일본에 사무소를 설립하고, 후생노동성장관 또는 그 현의 노동국 국장에게 등록되도록 요구된다.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 5 장 및 제 8 장(1972 년 법률 제 57 호)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한 등록 및 지정에 관한 성령 및 그 법에 기반한 명령(1972 년 노동성령 제 44 호) 작업환경측정법 제 2 장 및 제 3 장(1975 년 법률 제 28 호) 작업환경측정법 시행규정(1975 년 노동성령 제 20 호)

39	분야	:	측량 서비스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JSIC 7422 측량 서비스
	정부수준	:	중앙정부
	의무유형	: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측량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인은 일본에 사업장을 설립하고 국토교통성장관에게 등록되도록 요구된다.
	조치	:	측량법 제 6 장(1949 년 법률 제 188 호)

40	분야	:	운송
	하위분야	:	항공운송
	산업분류	:	JSIC 4600 관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본점 JSIC 4611 항공운송
	정부수준	:	중앙정부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1. 일본에서 항공운송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따른 사전 통보 요건 및 심사 절차가 적용된다. 2. 심사는 그 투자가 일본 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실시된다. ¹³ 3. 심사 결과에 따라, 그 투자자는 투자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또는 투자 절차를 중지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4. 허가를 신청하는 다음의 자연인 또는 실체에게는

¹³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목록 가의 유보항목 10, 12, 13, 15, 37, 46, 47, 55 및 57 번에 언급된 “국가 안보” 에 대한 언급이 이 유보내용에서 누락되었다고 하여, 제 10.15 조(안보 예외) 및 제 17.13 조(안보 예외)가 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그 심사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일본이 제 10.15 조(안보 예외) 및 제 17.13 조(안보 예외)를 원용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본 항공사로서의 항공운송업 수행에 대한 국토교통성장관의 허가가 부여되지 않는다.

가.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연인

나. 외국국가, 또는 외국공공기관이나 그와 동등한 것

다. 외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구성된 법인 또는 그 밖의 실체, 그리고

라. 가호, 나호 또는 다호에 언급된 자연인이나 실체가 대표하는 법인,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가호, 나호 또는 다호에 언급된 자연인이나 실체로 구성된 법인, 또는 의결권의 3분의 1 이상을 가호, 나호 또는 다호에 언급된 자연인이나 실체가 보유한 법인

항공사가 가호부터 라호까지에 언급된 자연인이나 실체가 된 경우, 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할 것이다. 허가 조건은 항공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지주회사와 같은 회사에도 적용된다.

5. 일본항공사 또는 그러한 항공사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지주회사와 같은 회사는

	<p>제 4 항가호부터 제 4 항다호까지에 규정되고, 그러한 항공사나 회사에 대한 투자 지분을 소유한 자연인이나 실체가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할 때, 그러한 요청을 수락하면 그러한 항공사나 회사가 제 4 항라호에 언급된 법인이 되는 경우 그러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p> <p>6. 국제 항공운송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 항공사는 국토교통성장관의 허가를 획득할 것이 요구된다.</p> <p>7. 일본을 오가는 여객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을 위하여 보수를 받고 외국 항공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성장관의 허가가 요구된다.</p> <p>8. 외국 항공기는 일본 국내 지점 간의 비행에 사용될 수 없다.</p>
조치	<p>: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제 27 조(1949년 법률 제 228 호)</p> <p>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정령 제 3 조(1980년 정령 제 261 호)</p> <p>항공법제 7 장 및 제 8 장(1952년 법률 제 231 호)</p>

41	분야	:	운송
	하위분야	:	항공운송
	산업분류	:	JSIC 4600 관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본점 JSIC 4621 항공운송을 제외한 항공기 서비스
	정부수준	:	중앙정부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1. 일본에서 항공기사용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따른 사전 통보 요건 및 심사 절차가 적용된다. 2. 심사는 그 투자가 일본 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실시된다. ¹⁴ 3. 심사 결과에 따라, 그 투자자는 투자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또는 투자 절차를 중지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4. 허가를 신청하는 다음의 자연인 또는 실체에게는

¹⁴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목록 가의 유보항목 10, 12, 13, 15, 37, 46, 47, 55 및 57 번에 언급된 “국가 안보” 에 대한 언급이 이 유보내용에서 누락되었다고 하여, 제 10.15 조(안보 예외) 및 제 17.13 조(안보 예외)가 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그 심사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일본이 제 10.15 조(안보 예외) 및 제 17.13 조(안보 예외)를 원용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항공기사용사업 수행에 대한 국토교통성장관의 허가가 부여되지 않는다.

가.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연인

나. 외국 국가, 또는 외국 공공기관이나 그와 동등한 것

다. 외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구성된 법인 또는 그 밖의 실체, 그리고

라. 가호, 나호 또는 다호에 언급된 자연인이나 실체가 대표하는 법인,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가호, 나호 또는 다호에 언급된 자연인이나 실체로 구성된 법인, 또는 의결권의 3분의 1 이상을 가호, 나호 또는 다호에 언급된 자연인이나 실체가 보유한 법인

항공기사용사업을 수행하는 인이 가호부터 라호까지에 언급된 자연인이나 실체가 된 경우, 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할 것이다. 허가 조건은 항공기사용사업을 수행하는 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지주회사와 같은 회사에도 적용된다.

5. 외국 항공기는 일본 국내 지점 간의 비행에 사용될 수 없다.

조치	: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제 27 조(1949년 법률 제 228 호)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정령 제 3 조(1980년 정령 제 261 호) 항공법제 7 장 및 제 8 장(1952년 법률 제 231 호)
----	--

42	분야	:	운송
	하위분야	:	국가 등록부에의 항공기 등록
	산업분류	:	-
	정부수준	:	중앙정부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1. 다음의 자연인 또는 실체 중 누구라도 소유한 항공기는 국가 등록부에 등록될 수 없다. 가.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연인 나. 외국 국가, 또는 외국 공공기관이나 그와 동등한 것 다. 외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구성된 법인 또는 그 밖의 실체, 그리고 라. 가호, 나호 또는 다호에 언급된 자연인이나 실체가 대표하는 법인,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가호, 나호 또는 다호에 언급된 자연인이나 실체로 구성된 법인, 또는 의결권의 3분의 1 이상을 가호, 나호 또는 다호에 언급된 자연인이나 실체가 보유한 법인 2. 외국 항공기는 국가 등록부에 등록될 수 없다.
	조치	:	항공법 제 2 장(1952 년 법률 제 231 호)

43	분야	:	운송
	하위분야	:	통관 중개
	산업분류	:	JSIC 48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 부수 서비스
	정부수준	:	중앙정부
	의무유형	: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통관 중개업을 수행하려는 인은 일본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재무성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된다.
	조치	:	통관중개법 제 2 장(1967 년 법률 제 122 호)

44	분야	:	운송
	하위분야	:	화물운송주선업(항공운송을 이용하는 화물운송주선업은 제외한다)
	산업분류	:	JSIC 4441 집배 화물운송 JSIC 4821 집배 화물운송을 제외한 화물운송
	정부수준	:	중앙정부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1. 다음의 자연인 또는 실체가 국제해운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주선업을 수행하려면 국토교통성장관에게 등록되거나, 허가 또는 승인을 획득하도록 요구된다.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그러한 등록이 이루어지거나 그러한 허가 또는 승인이 부여된다. 가.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연인 나. 외국 국가, 또는 외국 공공기관이나 그와 동등한 것 다. 외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p>그 밖의 실체, 그리고</p> <p>라. 가호, 나호 또는 다호에 언급된 자연인이나 실체가 대표하는 법인,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가호, 나호 또는 다호에 언급된 자연인이나 실체로 구성된 법인, 또는 의결권의 3분의 1 이상을 가호, 나호 또는 다호에 언급된 자연인이나 실체가 보유한 법인</p> <p>2. 화물운송주선업을 수행하려는 인은 일본에 사무소를 설립하고 국토교통성장관에게 등록되거나 허가 또는 승인을 획득하도록 요구된다.</p>
<p>조치</p>	<p>: 화물운송주선업법 제 2 장부터 제 4 장까지(1989 년 법률 제 82 호)</p> <p>화물운송주선업법 시행규정(1990 년 운수성령 제 20 호)</p>

45	분야	:	운송
	하위분야	:	화물운송주선업(항공운송을 이용하는 화물운송주선업으로 한정한다)
	산업분류	:	JSIC 4441 집배 화물운송 JSIC 4821 집배 화물운송을 제외한 화물운송
	정부수준	:	중앙정부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1. 다음의 자연인 또는 실체는 일본에서의 지점 간 항공운송을 이용한 화물운송주선업을 수행할 수 없다.</p> <p>가.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연인</p> <p>나. 외국 국가, 또는 외국 공공기관이나 그와 동등한 것</p> <p>다. 외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그 밖의 실체, 그리고</p> <p>라. 가호, 나호 또는 다호에 언급된 자연인이나 실체가 대표하는 법인, 이사의 3분의 1</p>

	<p>이상이 가호, 나호 또는 다호에 언급된 자연인이나 실체로 구성된 법인, 또는 의결권의 3분의 1 이상을 가호, 나호 또는 다호에 언급된 자연인이나 실체가 보유한 법인</p> <p>2. 국제 항공운송을 이용한 화물운송주선업을 수행하려는 제1항에 언급된 자연인 또는 실체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되거나 허가 또는 승인을 획득하도록 요구된다.</p> <p>상호주의를 기반으로, 그러한 등록이 이루어지거나 허가 또는 승인이 부여된다.</p>
조치	<p>: 화물운송주선업법 제 2 장부터 제 4 장까지(1989 년 법률 제 82 호)</p> <p>화물운송주선업법 시행규정(1990 년 운수성령 제 20 호)</p>

46	분야	:	운송
	하위분야	:	철도운송
	산업분류	:	JSIC 421 철도운송 JSIC 4851 철도시설 서비스
	정부수준	:	중앙정부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본에서 철도운송 산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따른 사전 통보 요건 및 심사 절차가 적용된다. 2. 심사는 그 투자가 국가 안보가 침해되거나 공공 질서의 유지가 저해되거나 공공 안전의 보호가 방해되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실시된다. 3. 심사 결과에 따라, 그 투자자는 투자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또는 투자 절차를 중지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4. 철도운송 산업용 차량 또는 부품 및 구성품의 제조는 철도운송 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의 제조에 대한 투자에는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따른 사전 통보 요건과 심사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치	: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제 27 조(1949년 법률 제 228 호)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정령 제 3 조(1980년 정령 제 261 호)
----	--

47	분야	:	운송
	하위분야	:	도로여객운송
	산업분류	:	JSIC 4311 일반승합자동차 운영자
	정부수준	:	중앙정부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본에서 승합자동차 산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따른 사전 통보 요건 및 심사 절차가 적용된다. 2. 심사는 그 투자가 국가 안보가 침해되거나 공공 질서의 유지가 저해되거나 공공 안전의 보호가 방해되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실시된다. 3. 심사 결과에 따라, 그 투자자는 투자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또는 투자 절차를 중지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4. 승합자동차 산업용 차량 또는 부품 및 구성품의 제조는 승합자동차 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의 제조에 대한 투자에는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따른 사전 통보 요건 및 심사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치	: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제 27 조(1949년 법률

제 228 호)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정령 제 3 조(1980년 정령
제 261 호)

48	분야	:	운송
	하위분야	:	도로운송
	산업분류	:	JSIC 431 일반승합자동차 운영자 JSIC 432 일반 택시 운영자 JSIC 433 전세 승합자동차 운영자 JSIC 4391 자동차 여객운송(특정 계약) JSIC 441 일반자동차 화물운송 JSIC 442 자동차 화물운송(특정 계약) JSIC 443 소형 자동차 화물운송
	정부수준	:	중앙정부
	의무유형	: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여객운송업 또는 도로화물운송업을 수행하려는 인은 일본에 사업장을 설립하고 국토교통성장관의 허가를 획득하거나 그에 대하여 통보를 제출하도록 요구된다. 2. 일반 택시운영자 사업의 경우, 국토교통성장관은 국토교통성장관이 지정한 “특정 지역” 및 “준특정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려는 인에게 허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그러한 업체의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준특정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일반 택시운영업체의 수용량이 교통 수요량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특정 및 준특정 지

	<p>역에서의 택시 사업의 적절한 관리 및 재활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년 법률 제64호)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면 그러한 허가가 부여되거나 그러한 사업계획 변경이 승인될 수 있다. 그 지역의 일반 택시운송업체의 수용량이 운송안전과 승객의 편의를 보장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통 수요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러한 지정이 이루어질 것이다.</p> <p>3. 일반 자동차 화물운송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업(특정 계약)의 경우, 국토교통성장관은 국토교통성장관이 지정한 “비상 공급 또는 수요 조정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려는 인에게 허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그러한 업체의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지역의 일반 자동차 화물운송업체 또는 자동차 화물운송업체(특정 계약)의 역량이 그러한 사업의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운송 수요량을 증대하게 초과한 경우, 그러한 지정이 이루어질 것이다.</p>
조치	<p>: 도로운송법 제2장(1951년 법률 제183호)</p> <p>특정 및 준특정 지역에서의 택시 사업의 적절한 관리 및 재활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장 및 제7장(2009년 법률 제64호)</p> <p>화물운송사업법 제2장(1989년 법률 제83호)</p>

49	분야	:	운송
	하위분야	:	운송 부수 서비스
	산업분류	:	JSIC 4852 도로운송용 고정시설
	정부수준	:	중앙정부
	의무유형	: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u></p> <p>자동차도로 사업을 수행하려는 인은 국토교통성장관으로부터 면허를 획득해야 한다. 면허 발급은 제안된 자동차도로가 제안된 지역의 교통 수요의 양과 성격에 비추어 적절한 규모인지 여부와 같은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한다.</p>
	조치	:	도로운송법 제 4 장(1951 년 법률 제 183 호)

50	분야	:	운송
	하위분야	:	운송 부수 서비스
	산업분류	:	-
	정부수준	:	중앙정부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1. 일본 국민만 일본에서 도선사가 될 수 있다. 2. 동일 도선구역에서 선박을 지휘하는 도선사는 그 도선구역에 대한 도선사협회를 설립하도록 요구된다.
	조치	:	도선법 제2장부터 제4장까지(1949년 법률 제121호)

51	분야	:	운송
	하위분야	:	수상운송
	산업분류	:	JSIC 451 외항 운송
	정부수준	:	중앙정부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다른 당사자의 외항선박운항사업자는 일본의 외항선박 운항사업자가 그 당사자에 의하여 권리를 저해당하는 경우 일본 항구로의 진입이나 일본에서의 화물 선적 및 하역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다.
	조치	:	일본 외항선박운항사업자에 대한 외국 정부의 불리한 대우에 관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1977년 법률 제60 호)

52	분야	:	운송
	하위분야	:	수상운송
	산업분류	:	JSIC 452 연안운송 JSIC 453 내륙수상운송 JSIC 4542 연안 선박리스
	정부수준	:	중앙정부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본에서 수상운송 산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따른 사전 통보 요건 및 심사 절차가 적용된다. 2. 심사는 그 투자가 일본 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실시된다.¹⁵ 3. 심사 결과에 따라, 그 투자자는 투자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또는 투자 절차를 중지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상운송 산업”은 외항 또는 원양 운송, 연안운송(즉 일본 내 항구 간의

¹⁵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목록 가의 유보항목 10, 12, 13, 15, 37, 46, 47, 55 및 57 번에 언급된 “국가 안보” 에 대한 언급이 이 유보내용에서 누락되었다고 하여, 제 10.15 조(안보 예외) 및 제 17.13 조(안보 예외)가 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그 심사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일본이 제 10.15 조(안보 예외) 및 제 17.13 조(안보 예외)를 원용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p>해상운송), 내륙수상운송 및 선박리스 산업을 지칭한다. 다만, 연안 선박임대 산업을 제외한 외항 또는 원양 운송 산업 및 선박리스 산업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따른 사전 통보 요건 및 심사 절차가 면제된다.</p>
	<p>조치</p>	<p>: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제 27 조(1949년 법률 제 228 호)</p> <p>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정령 제 3 조(1980년 정령 제 261 호)</p>

53	분야	:	운송
	하위분야	:	수상운송
	산업분류	:	-
	정부수준	:	중앙정부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일본의 법과 규정 또는 일본이 당사자인 국제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일본 국기를 게양하지 않은 선박은 대외통상에 개방되지 않은 일본 내 항구 진입 및 일본 내 항구 간 화물이나 여객 운반이 금지된다.
	조치	:	선박법 제 3 조(1899 년 법률 제 46 호)

54	분야	:	직업능력시험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
	정부수준	:	중앙정부
	의무유형	: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특정한 유형의 비영리단체 중 일부(고용주들의 단체, 그 단체들의 연합, 일반사단법인, 일반재단법인, 법인인 노동조합 또는 각종 비영리법인인 단체)에서 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 시험을 실시하려는 그러한 기관은 일본에 사무소를 설립하고 후생노동성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요구된다.
	조치	:	인적자원개발촉진법 제 5 장(1969 년 법률 제 64 호)

55	분야	:	상수도사업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JSIC 3611 산업용 사용자를 제외한 최종사용자를 위한 수도
	정부수준	:	중앙정부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본에서 상수도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따른 사전 통보 요건 및 심사 절차가 적용된다. 2. 심사는 그 투자가 국가 안보가 침해되거나 공공 질서의 유지가 저해되거나 공공 안전의 보호가 방해되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실시된다. 3. 심사 결과에 따라 그 투자자는 투자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또는 투자 절차를 중지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조치	:	<p>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제27조(1949년 법률 제228호)</p> <p>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정령 제3조(1980년 정령 제 261호)</p>

56	분야	:	도소매업
	하위분야	:	가축
	산업분류	:	JSIC 5219 각종 농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
	정부수준	:	중앙정부
	의무유형	: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u></p> <p>가축 매매업을 수행하려는 인은 일본에 거주하고 거주지를 관할하는 현의 지사로부터 면허를 획득하도록 요구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축 매매”란 가축의 매매나 교환, 또는 그러한 매매나 교환을 위한 주선을 말한다.</p>
	조치	:	가축매매인법 제 3 조(1949 년 법률 제 208 호)

57 분야	:	항공우주 산업
하위분야	:	항공기 제조 및 수리 산업
산업분류 ¹⁶	:	JSIC 16* 화학 및 연관 제품 제조업 JSIC 18* 달리 분류된 경우를 제외한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JSIC 19* 고무 제품 제조업 JSIC 21* 도자, 돌 및 점토 제품 제조업 JSIC 23* 비철금속 및 제품 제조업 JSIC 24*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JSIC 25* 일반 목적의 기계류 제조업 JSIC 27* 사무용 기계류 제조업 JSIC 28* 전자부품, 장치 및 전자회로 JSIC 29* 전기 기계, 장비 및 보급품 제조업 JSIC 30* 정보통신 전자장비 제조업 JSIC 31* 운송 장비 제조업 JSIC 39* 정보서비스 JSIC 90* 달리 분류된 경우를 제외한 기계 등 수리 서비스
정부수준	:	중앙정부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¹⁶ JSIC 번호 위의 별표(*)는 그러한 번호에 따라 이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활동이 항공우주 산업에 관련된 활동으로 제한된다는 것을 표시한다.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유보내용	<p data-bbox="651 331 935 367">: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ol data-bbox="651 421 1382 1984"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651 421 1382 568">1. 일본에서 항공기 산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따른 사전 통보 요건 및 심사 절차가 적용된다. <li data-bbox="651 680 1382 887">2. 심사는 그 투자가 국가 안보가 침해되거나 공공 질서의 유지가 저해되거나 공공 안전의 보호가 방해되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실시된다. <li data-bbox="651 999 1382 1146">3. 심사 결과에 따라, 그 투자자는 투자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또는 투자 절차를 중지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li data-bbox="651 1258 1382 1406">4. 항공기 산업에 관련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기술 도입 계약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따른 사전 통보 요건 및 심사 절차를 조건으로 한다. <li data-bbox="651 1518 1382 1724">5. 심사는 기술 도입 계약의 체결이 국가 안보가 침해되거나, 공공 질서의 유지가 저해되거나, 공공 안전의 보호가 방해되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실시된다. <li data-bbox="651 1836 1382 1984">6. 심사 결과에 따라, 그 거주자는 기술 도입 계약의 조항을 변경하도록 또는 그 계약의 체결을 중단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p>7. 그 분야의 제조업자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되는 면허의 수는 제한될 수 있다.</p> <p>8. 항공기를 생산하고 수리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기업은 일본의 법과 규정에 따라 항공기의 제조 또는 수리에 관련된 공장을 설립하도록 요구된다.</p>
조치	:	<p>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제27조, 28조 및 제30조(1949년 법률 제228호)</p> <p>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정령 제3조부터 제5조까지 (1980년 정령 제261호)</p> <p>항공기제조산업법 제2조부터 제5조까지(1952년 법률 제237호)</p>

목록 나

주해

1. 목록 나는 제8.8조(비합치 조치 목록)제2항 및 제10.8조(유보 및 비합치 조치)제2항에 따라, 특정 분야, 하위분야 또는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않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일본이 유보한 항목을 규정한다.

가. 제8.4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3조(내국민 대우)

나. 제8.5조(시장접근)

다. 제8.6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4조(최혜국 대우)

라. 제8.11조(현지주재)

마. 제10.6조(이행요건 금지) 또는

바. 제10.7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17,18}

2. 각 유보항목은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¹⁷목록 나 의 목적상, “의무유형” 에 명시된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는 제 10.2 조(적용범위) 제 3 항에 따라 부과되는,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관련된 의무를 포함한다.

¹⁸투명성 목적상, 목록 나 의 유보항목은 제 10.15 조(안보 예외), 제 17.12 조(일반적 예외) 또는 제 17.13 조(안보 예외)에 따라 일본이 한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 다. **산업분류**는 적용 가능한 경우, 그리고 투명성 목적으로만, 국내 또는 국제 산업분류코드에 따라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활동을 지칭한다.
 - 라. **의무유형**은 제1항에 언급된 유보된 의무를 명시한다.
 - 마.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활동의 범위를 규정한다. 그리고
 - 바. **기존조치**는 투명성 목적상,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활동에 적용되는 기존의 조치를 적시한다.
3. 유보항목을 해석할 때, 그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유보내용** 요소는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4. 금융 서비스에 대하여,
- 가. 부속서 8-가(금융 서비스) 제4조(건전성 조치)의 맥락에서 건전성을 이유로, 일본은 상업적 주재의 법적 형태에 대한 비차별적 제한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일본은 신규 금융 서비스 시장으로의 진입에 대하여 그러한 건전성 목표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들에 합치되는 비차별적 제한을 적용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증권회사는 일본의 관련 법과 규정에 정의된 증권의 거래가 허용되며, 은행은 그러한 법과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증권의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 나. 서비스 공급자의 어떠한 적극적 마케팅 없이 다른 당사자의 영역에서 일본의 서비스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서비스는 제8.1조(정의)러호2목에 따라 공급되는 서비스로 간주된다.
5. 항공운송 서비스에 대하여, 운항권 또는 운항권의 행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제8.2조(적용범위)에 따라 제8장(서비스 무역)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므로, 목록 나에 열거되지 않는다.

6. 구체적 약속 양허표 기재지침(2001년 3월 28일자 WTO 문서 S/L/92) 첨부 6을 고려하여, 제8.5조(시장접근)에 따른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전파의 이용가능성에 관한 일본의 법과 규정은 목록 나에 포함되지 않는다.

7. 제8장(서비스 무역)의 목적상, 일본은 GATS 제28조카호2목2에 따라 통보를 제출한 당사자의 영주권자를 제외하고 다른 당사자의 영주권자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8. 목록 나의 목적상,

가. “JSIC”란 일본 총무성이 규정하고 2013년 10월 30일에 개정된 일본표준산업분류를 말한다.

나. “CPC”란 잠정 중앙상품분류(통계문서시리즈 M No. 77, 국제경제사회국, UN 통계사무소, 뉴욕, 1991)를 말한다.

1	분야	:	모든 분야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무역 및 투자</u></p> <p>1. 공기업이나 정부기관에 대한 자신의 지분 또는 공기업이나 정부기관의 자산을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일본은 다음의 권리를 유보한다.</p> <p>가. 다른 당사자의 투자자들 또는 그들의 투자에 의한 그러한 지분이나 자산의 소유를 금지하거나 제한을 부과할 권리</p> <p>나. 다른 당사자의 투자자들 또는 그들의 투자가 그러한 지분 또는 자산의 소유자로서 그 결과로 인한 어떠한 기업을 지배하는 능력을 제한할 권리, 또는</p> <p>다. 그 결과로 인한 어떠한 기업의 임원, 관리자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국적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p> <p>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중앙 수준의 일본 정부는</p>

		제 1 항에 언급된 지분이나 자산이 중앙 수준의 일본 정부에서 투자자로 최초 양도된 후에는 제 1 항에 언급된 어떠한 금지, 제한 또는 조치도 새로운 법이나 규정에 의하여 채택하지 않는다. ¹⁹
기존조치	:	—

¹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중앙 수준의 일본 정부는 최초 양도 시점에 채택되거나 유지된 그러한 금지, 제한 또는 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

2	분야	:	모든 분야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일본은 일본에서의 전신 서비스, 베팅 및 도박 서비스, 담배 제품 제조, 일본은행 지폐 제조, 주화 제작 및 판매, 그리고 우편 서비스에 대한 투자 또는 공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²⁰
	기존조치	:	전기통신사업법 보충조항 제 5 조(1984 년 법률 제 86 호) 우편법 제 2 조(1947 년 법률 제 165 호) 민간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신 송달에 관한

²⁰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우편 서비스”란 우편법(법률 제 165 호, 1947 년) 제 4 조제 2 항에 명시된 타인의 서신 송달(타닌 노 신쇼 노 소타츠) 및 민간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신 송달에 관한 법(법률 제 99 호, 2002 년)의 의미에서 서신 송달 서비스(신쇼빈 노 에키무)를 말하나, 후자의 법의 의미에서 특별 서신 송달 서비스(토쿠테이 신쇼빈 에키무)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정의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에는 소포, 포장물, 상품, 직접우편 및 정기간행물의 배달이 포함된다.

	<p>법(2002년 법률 제 99호)</p> <p>경매법 제 1-2 조(1948년 법률 제 158호)</p> <p>경정에 관한 법 제 2 조(1951년 법률 제 242호)</p> <p>경륜법 제 1 조(1948년 법률 제 209호)</p> <p>자동차경주법 제 3 조(1950년 법률 제 208호)</p> <p>복권법 제 4 조(1948년 법률 제 144호)</p> <p>일본은행법 제 46 조 및 제 49 조(1997년 법률 제 89호)</p> <p>통화의 단위 및 화폐의 발행에 관한 법 제 4 조 및 제 10 조(1987년 법률 제 42호)</p> <p>체육진흥복권법 제 3 조(1998년 법률 제 63호)</p>
--	--

3	분야	:	모든 분야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1. 일본은 일본 정부가 인정했거나 이 협정이 발효된 시점의 상황으로 인하여 일본 정부가 인정했어야 하는 산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 이 협정이 발효된 시점에 JSIC 또는 CPC 에 적극적이고 명시적으로 분류된 모든 산업은 그 시점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인정되었어야 한다. 3. 일본은 이 협정이 발효된 시점에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았던 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

4	분야	:	모든 분야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
	의무유형	: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1. 일본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시행 중이거나 그 전에 서명된 모든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협정과, 그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협정의 개정 및 후속 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2. 일본은 다음에 관한 모든 양자 간 또는 다자간 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가. 수산업, 또는</p> <p>나. 해난구조를 포함한 해양 사안</p>
	기존조치	:	-

5	분야	:	모든 분야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 (제 8.6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일본은 제9장(자연인의 일시 이동) 및 부속서IV의 일본의 양허표(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를 조건으로, 제8.1조(정의)러호4목에 언급된 공급형태를 통한 서비스 공급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

6	분야	:	항공우주산업
	하위분야	:	우주산업
	산업분류	:	-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1. 일본은 우주 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 일본은 다음을 포함하는 우주산업에서의 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개발,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기술 수입에 관한 기술 도입 계약에 기반한 서비스 나. 수수료 또는 계약 기반 생산 서비스 다. 수리 및 정비 서비스, 그리고 라. 우주 운송 서비스
	기존조치	: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제27조, 제28조 및 제30조 (1949년 법률 제228호)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정령 제3조부터 제5조까지 (1980년 정령 제261호)
--	--	--	--

7	분야	:	무기 및 폭발물 산업
	하위분야	:	무기 산업 폭발물 제조 산업
	산업분류	:	-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1. 일본은 무기 산업 및 폭발물 제조 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 일본은 다음을 포함하는 무기 산업 및 폭발물 제조 산업에서의 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개발,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기술 수입에 관한 기술 도입 계약에 기반한 서비스 나. 수수료 또는 계약 기반 생산 서비스, 그리고 다. 수리 및 정비서비스

기존조치	: 무기 등 제조법 제5조(1953년 법률 제145호)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제27조, 제28조 및 제30조 (1949년 법률 제228호)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정령 제3조부터 제5조까지 (1980년 정령 제261호)
------	---

8	분야	:	교육 및 학습지원
	하위분야	: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서비스
	산업분류	:	JSIC 811 유치원 JSIC 812 소학교 JSIC 813 중학교 JSIC 814 고등학교, 중등학교 JSIC 815 특수교육학교 JSIC 819 유아교육보육통합센터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일본은 초등 및 중등 교육서비스에 대한 투자 또는 공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교육기본법 제 6 조(2006 년 법률 제 120 호) 학교교육법 제 2 조(1947 년 법률 제 26 호) 사립학교법 제 3 조(1949 년 법률 제 270 호) 미취학아동의 교육 및 보육 등과 관련된 종합 서비스 증진에 관한 법(2006 년 법률 제 77 호)

9	분야	:	에너지
	하위분야	:	전력 산업 가스 산업 원자력 산업
	산업분류	:	-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일본은 “하위분야” 요소에 열거된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제27조, 제28조 및 제30조 (1949년 법률 제228호)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정령 제3조부터 제5조까지 (1980년 정령 제261호)

10	분야	:	금융 서비스
	하위분야	:	은행 및 그 밖의 금융 서비스(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는 제외한다)
	산업분류	:	-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 (제 8.6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1. 일본은 부속서 8-가(금융 서비스) 제1조(정의)나 호15목에 언급된 금융 정보의 제공 및 이전과 금융 자료 처리, 그리고 부속서 8-가(금융 서비스) 제1조(정의)나 호16목에 언급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 서비스와 관련하여 중개를 제외한 자문 및 그 밖의 부수 서비스를 제외하고, 제8.1조(정의)러 호1목에 정의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²¹ 2. 일본은 부속서 8-가(금융 서비스) 제1조(정의)나 호5목부터16목까지에 언급된 서비스를 제외하고, 제8.1조(정의)러호2목에 정의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 서비스의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금융상품거래법 제 29 조, 제 29-2 조 및 제 61 조(1948 년 법률 제 25 호)

²¹이 유보항목에 대하여, 일본은 다른 당사자의 금융 서비스 공급자 및 금융상품의 등록 또는 승인을 요구할 수 있다.

11	분야	:	금융 서비스
	하위분야	: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산업분류	:	-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u></p> <p>일본은 다른 당사자에 설립된 그 당사자의 금융 서비스 공급자가 공급하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외하고, 제 8.1 조(정의)러호 1 목 및 2 목에 정의된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의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가. 다음에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험</p> <p>1) 해상 운송 및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 운송(위성을 포함한다).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운송 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p> <p>2) 국제적으로 통과 중인 상품</p> <p>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과 부속서 8-가(금융 서비스) 제1조(정의)나호2목 및 4목에 언급된 보</p>

		<p>험 부수 서비스, 그리고</p> <p>다. 부속서 8-가(금융 서비스) 제1조(정의)나호3 목에 언급된 중개 및 대리와 같은, 이 유보항 목의 가호 및 나호에 열거된 서비스와 관련한 보험 위험에 대한 보험 중개²²</p>
<p>기존조치</p>	<p>:</p>	<p>보험업법 제185조, 제186조, 제275조부터 제277조까 지, 제286조 및 제287조(1995년 법률 제105호)</p> <p>보험업법 시행에 관한 정령 제19조 및 제39-2조 (1995년 정령 제425호)</p> <p>보험업법 시행에 관한 성령 제116조 및 제212-6조 (1996년 재무성령 제5호)</p>

²²보험 중개 서비스는 일본에서 공급이 허용된 보험 계약으로 한정하여 공급될 수 있다.

12	분야	:	수산업 및 수산업 부수 서비스
	하위분야	:	영해, 내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내에서의 수산업
	산업분류	:	JSIC 031 해양수산업 JSIC 032 내수면수산업 JSIC 041 해양양식업 JSIC 042 내수면양식업 JSIC 8093 레저어획가이드업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일본은 영해, 내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내에서의 수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²³

²³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수산업”이란 다음의 수산업 관련 활동을 포함하여 수산자원의 포획 및 양식 작업을 말한다.

- 가. 그러한 자원을 포획하지 않는 수산자원 조사
- 나. 수산자원 유인
- 다. 어획고 보존 및 처리

<p>기존조치</p>	<p>: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제 27 조 1949 년 법률 제 228 호)</p> <p>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정령 제 3 조(1980 년 정령 제 261 호)</p> <p>외국 국민에 의한 조업 규제에 관한 법 제 3 조, 제 4 조 및 제 6 조(1967 년 법률 제 60 호)</p> <p>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조업에 대한 주권 행사에 관한 법 제 4 조, 제 5 조, 제 7 조부터 제 12 조까지 및 제 14 조(1996 년 법률 제 76 호)</p>
-------------	---

라. 어획고 및 어류 제품의 운송, 그리고

마. 수산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선박에 대한 보급품 제공

13 분야	: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하위분야	:	방송산업
산업분류	:	<p>JSIC 380 행정 또는 보조적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설립체</p> <p>JSIC 381 유선방송을 제외한 공영방송</p> <p>JSIC 382 유선방송을 제외한 민간부문 방송</p> <p>JSIC 383 유선방송</p>
의무유형	:	<p>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p> <p>시장접근(제 8.5 조)</p> <p>현지주재(제 8.11 조)</p> <p>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p> <p>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p>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일본은 방송 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²⁴</p>
기존조치	:	<p>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제 27 조(1949년 법률 제 228 호)</p> <p>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정령 제 3 조(1980년 정령 제 261 호)</p>

²⁴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방송”은 공중에 의한 직접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통신의 송신(방송법 제 2 조제 1 항)을 말하며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포함하는 주문형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전과법 제 2 장(1950 년 법률 제 131 호)

방송법 제 2 장 및 제 5 장부터 제 8 장까지(1950 년
법률 제 132 호)

14	분야	:	토지 거래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일본에서의 토지재산 취득 또는 리스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제한이 부과될 수 있다.
	기준조치	:	외국인토지법(1925년 법률 제 42호)

15	분야	:	공공 법 집행과 교정 서비스 및 사회 서비스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일본은 공법의 집행과 교정 서비스, 그리고 소득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보장 또는 보험, 사회복지, 공공 훈련, 보건, 보육 및 공공주택과 같은 사회 서비스에 대한 투자 또는 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

16	분야	:	경비서비스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JSIC 923 경비서비스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일본은 경비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경비업법 제 4 조 및 제 5 조 (1972 년 법률 제 117 호)

17	분야	:	운송
	하위분야	:	항공운송
	산업분류	:	-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일본은 공항 또는 공항 운영 서비스에 대한 투자 또는 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²⁵
	기존조치	:	-

²⁵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공항 운영 서비스”란 수수료 또는 계약에 기반한 공항 터미널, 비행장 및 그 밖의 공항 기반시설 운영 서비스의 공급을 말한다. 공항 운영 서비스는 항공 항행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다.

18	분야	:	모든 분야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일본은 일본의 영해, 내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대한 투자 또는 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

19	분야	:	모든 분야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
	의무유형	:	최혜국 대우(제 8.6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일본은 제 8.1 조(정의)러호 4 목에 언급된 공급형태를 통한 서비스 공급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

20	분야	:	금융 서비스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일본은 제8.1조(정의)리호4목에 언급된 공급형태를 통한 금융서비스공급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

21	분야	:	시청각 서비스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일본은 시청각 후반제작 서비스 공급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

22	분야	:	고용된 자연인이 있는 민간 가구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JSIC 792 가사서비스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일본은 간호와 무관하게 고용된 자연인에 의한 민간 가사 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

23	분야	:	텔레마케팅 서비스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일본은 텔레마케팅 서비스 공급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

24	분야	:	운송
	하위분야	:	항공운송
	산업분류	:	-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일본은 항공에 대한 모든 양자 간 또는 다자간 협정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